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6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김선교 · 임이자

송석준 · 안철수 · 김 건

이주영 • 배준영 • 허종식

김은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·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,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.

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,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.

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, 해사행정사건,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,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63호) 및 「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62호) 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7종류"를 "8종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3의2. 해사법원

제5조제2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본문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행정법원"을 각각 "해사법원 및 행정법원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 및 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"특허법원"을 각각 "특허법원·해사법원"으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사건은"을 "사건 및 제28조의7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"으로 한다.

제3편에 제2장의2(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의2 해사법원

제28조의5(해사법원장) ① 해사법원에 해사법원장을 둔다.

- ② 해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
- ③ 해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④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8조의6(부) ① 해사법원에 부를 둔다.
 - ②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28조의7(심판권)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
 - 가. 「상법」 제4편제2장제4절(해상보험) 및 제5편(해상)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(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 한다)
 - 나. 「선원법」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
 - 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(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또는 항해, 선박채권 또는 그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,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
 - 2.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

- 가. 해사항고소송: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(이하 "해사행 정청"이라 하며,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 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,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 인을 포함한다)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
- 나. 해사당사자소송: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. 다만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 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3.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
- 4.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-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 • 결정 •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- ③ 해사행정소송은 「행정소송법」을 준용하되, 「행정소송법」상 "행정법원"은 "해사법원"으로 본다.
- 제28조의8(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) ① 제28조의7에 규정된 해사 사건과 관련되는 소송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소송(이하 "관 련청구소송"이라 한다)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 -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,

해사법원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되어 온 경우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.

제44조제2항 중 "특허법원장"을 "특허법원장, 해사법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법원의 종류) ① 법원은 다	제3조(법원의 종류) ①
음의 <u>7종류</u> 로 한다.	<u>8종류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 3의2. 해사법원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고등법원· <u>특허법원</u> ·지방	③ <u>특허법원·해사법</u>
법원 • 가정법원 • 행정법원 • 회	<u>윈</u>
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	
원의 지원, 가정지원, 시・군법	
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	
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, 등기소	
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	
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	,
제5조(판사) ① (생 략)	제5조(판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등법원· <u>특허법원</u> ·지방	② <u>특허법원·해사법</u>
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	<u>윈</u>
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직무대리) ① 대법원장은	제6조(직무대리) ①
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	
· <u>특허법원</u> ·지방법원·가정법	특허법원·해사법원
원·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	
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	

있다.

- ② (생략)
- 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고등법원·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. 다만,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.
 - ④ · ⑤ (생 략)
- - ② (생 략)
- 제10조(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)
 ① 고등법원·<u>특허법원</u>·지방 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, 대

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 • ②
(현행과 같음)
③특허법원·해사법
원
<u>:</u>
न्नो भो ठो - चो
<u>행정법원</u>
<u>정법원</u>
<u>.</u>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판사회의) ①
특허법원·해사법원
<u> 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)
① <u>특허법원·해사법</u>
원

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 (局)을 둘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(補)하고, 고등법원 국장, 지방 법원 사무국장(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) 및 국장, 가정법원 사무국 장, 행정법원 사무국장,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,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 · 법원서기관 ·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(생 략)

제14조(심판권) 대법원은 다음 각 지호의 사건을 종심(終審)으로 심판한다.

③특허법원 및 해
 사법원
 (A) (원 레기 기 이)
④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심판권)
'' 14('리진 단/
•

-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·<u>특</u>
 <u>허법원</u>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 건
- 2. 항고법원·고등법원 또는 항 소법원·<u>특허법원</u>의 결정·명 령에 대한 재항고사건
- 3. (생략)
- 제28조(심판권)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. 다만, 제2 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<u>사건은</u> 제외한다.
 -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

1 <u>특</u>
<u>허법원·해사법원</u>
2
<u>특허법원·해사법원</u>
3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심판권)
사건 및 제 <u>28</u>
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사
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-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장의2 해사법원
제28조의5(해사법원장) ① 해사법
원에 해사법원장을 둔다.
② 해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
<u>다.</u>
③ 해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
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
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④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
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

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<u>제28조의6(부) ① 해사법원에 부</u> 를 둔다.
 - ②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 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28조의7(심판권)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

 가. 「상법」 제4편제2장제4

 절(해상보험) 및 제5편(해
 - 상)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(외국법 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 한다)
 - 나. 「선원법」의 규정이 적

 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

 건
 - 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(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. 이한 이 호에서 같다) 또는 한해,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채 권,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

2.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가. 해사항고소송: 해양수산 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(이하 "해사행정청"이라 하며, 해사행정청에는 법 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 정기관,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 다)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나. 해사당사자소송: 해사행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 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.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으 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3.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

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

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4.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

<신 설>

-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 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의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 로 심판한다.
- ③ 해사행정소송은 「행정소송법」을 준용하되, 「행정소송법」상 "행정법원"은 "해사법원"으로 본다.
- 제28조의8(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) ① 제28조의7에 규정 된 해사사건과 관련되는 소송 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않 는 소송(이하 "관련청구소송"이 라 한다)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 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 -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, 해사법원은 다른 법원 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 되어 온 경우 이를 병합하여

제44조(보직) ① (생 략)

② 사법연수원장, 고등법원장, 특허법원장, 법원행정처차장,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.

심리할 수 있다.
제44조(보직) ① (현행과 같음)
②
-특허법원장, 해사법원장